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2025. 3. 25.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87호로 2025년 3월 10일 신홍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생 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특별휴가)** 제3항제9호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검토결과

-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민원공무원 조례”라 한다)가 제정(2024.12.26.)되었음.
- 한편,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제정 2021. 03.18.)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집행기관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 휴가(5일 이내)를 신설한 바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민원공무원 조례 제5조(지원사항)제4호에는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 조례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항)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